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검사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명시 등〉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72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동욱 · 조배숙 · 최수진 · 유용원 · 주진우 · 구자근
박준태 · 안상훈 · 강대식 · 박상웅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9. 17.

3. 회 부 일 : 2025. 9. 18.

※ 의안번호 : 1307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121조제5항 및 제128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121조제5항 및 제128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략) <u><신설></u> <u>사.·아.</u> (생략) 3. ~ 17. (생략) ② (생략)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특별검사 사무에 관한 사항</u> <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생략)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감사원장</u>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감사원장, 특별검사</u> ----- -----

현행	개정안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u>행정기관</u>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 ----- ----- ----- -----<u>행정기관, 특별검사</u>-----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특별검사의 유형에는 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ii)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 유형’과 ②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하는 ‘개별특검법 유형’이 있음.

상설특검법 유형에 따른 특별검사이든 개별특검법 유형에 따른 특

별검사이든 특별검사는 상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수사·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함.

한편,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7조제1항,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1조 및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8조는 특별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¹⁾

이에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 특별검사법을 소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

1)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별검사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검사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시적인 기관인 특별검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경우,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²⁾³⁾

둘째, ① 특별검사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국무위원·정부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회법」상 출석 요구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의 사례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참고로, 현재 임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상설적 기관인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한시적 기관을 특정하여 「국회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국회의 출석 요구 근거 및 보고·서류등 제출 요구 근거에도 해당하는 사항임.

4) 각 개별 근거법에 국회 출석·발언권 및 국회의 출석 요구가 규정되어 있음. 참고로, 신동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7호)은 특별검사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신설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② 특별검사는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②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조항인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특별검사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별검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대상에 특별검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국회관계법은 그 대상 기관에 대하여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① 정부·행정기관 등, ②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⁵⁾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17